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22호
2020. 3. 2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조 례(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36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37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조례 제1438호)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조례 제1439호) 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조례 제1440호)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41호)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제1442호)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조례 제1443호)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조례 제1444호) .. 43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34호)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고시 제2020-35호) 48

공 고(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75호) 50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76호) 51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277호) 5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290호) 53
-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공고 제2020-303호) 56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304호) 59

입 법 예 고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86호) ...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98호) ... 68

공 람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
일부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0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별표2).

- 당초 2,080,600원 ⇒ 변경 2,106,800원 / 26,200원(1.26%) 인상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8% * 70% = 1.2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을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

우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

기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촉하고”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p> <p>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p> <p>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p> <p>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p>

이내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④·⑤ (생략)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조리행위가 수뢰, 횡령, 배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
-----.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결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에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1호).
-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중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로 신고 기한을 적용하여 무한한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개정(제4조).
-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검토사항을 반영(제9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
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학교, 구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을 규정함(제3조).
- 기본원칙을 규정함(제4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제6조).
-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다.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및 가족·보호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 범죄·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
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
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징수) 돌봄 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그 밖의 운영원칙

제16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승인)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그 밖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 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

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 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에 드는 비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 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이행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 시행

제10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보행자 환경시설 점검 및 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4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광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투광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대해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오정동 274-3	한밭대로1006번길 96	2020. 3. 27.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오정동 494-17	대전로1033번길 64-3	2020. 3. 27.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대화동 1-17	대화로50번길 35	2020. 3. 27.	건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대동 411-50	신탄진로115번길 76	2020. 3. 27.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고시일 : 2020. 3. 27.
2. 고시방법 : 구보,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사항(붙임 참조)
4. 도로구간 변경 절차

주민의견 수렴공고	주민의견 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심의결과 공고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변경내용 및 변경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서면동의 받은 날로부터 ⇒ 10일 이내 서면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고시
	주소사용자의 1/2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공고
	주소사용자의 1/2미만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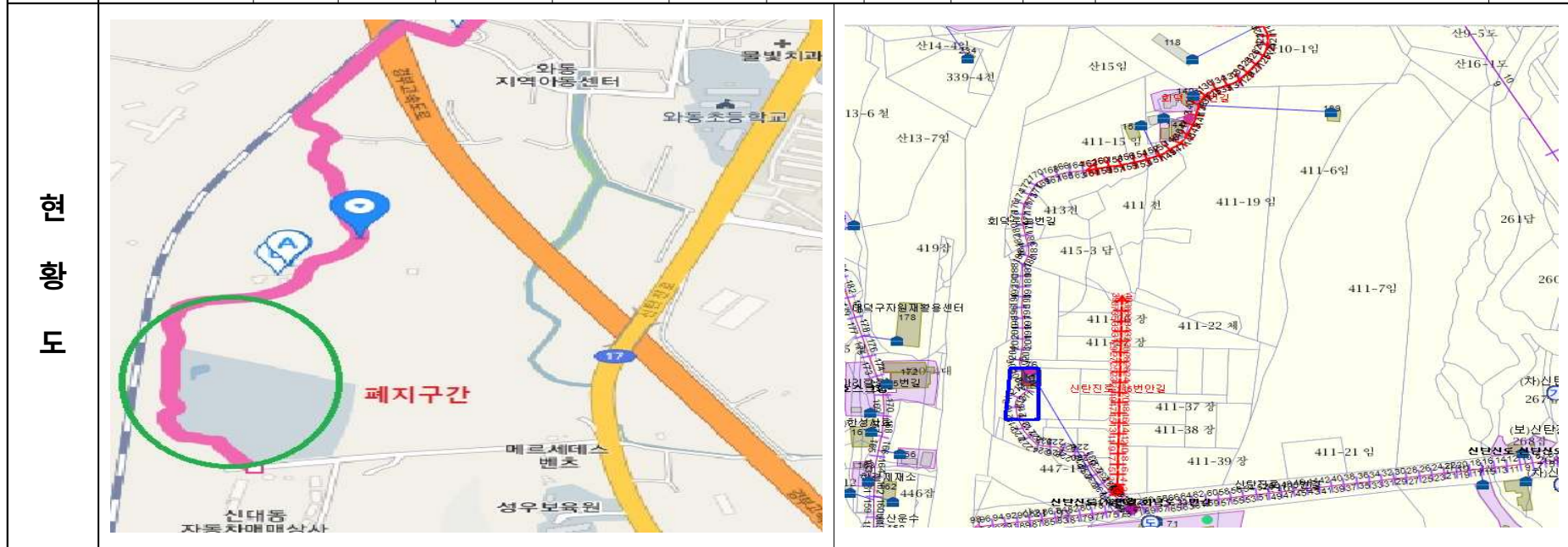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4 제6항에 따른 도로의 신설·변경·폐지로 도로구간의 끝지점만 변경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지적과(☎ 042-608-5302)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 도로명 : 회덕로33번길

구분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청구	도로구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m)	폭(m)		시작	끝		
변경전	회덕로33번길	길	대덕구	신대동 502-16	신대동 447-6	1,214	7	10	1	24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진입로 구간 도로명 신규부여로 기존 도로의 일부구간 끝지점만 폐지	
변경후	회덕로33번길	길	대덕구	신대동 502-16	신대동 411-15	1,214	7	10	1	162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대덕대로 1593번길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483번지	315.00	아스콘, 콘크리트	19.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2.80 (착공일로부터 20일)	5.99
2	대덕구 중리서로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364-4번지	160.00, 63.00	아스콘 (도막형비탁재)	29.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34.80 (착공일로부터 20일)	4.45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중리서로	도시가스관 매설	법동 284-10	150.00, 400.00	소형고압블록, 아스콘	13.0	착공일로부터 20일간	15.60 (착공일로부터 20일)	4.45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이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전 1,2산단(51개소)	오수관로 매설	대전 1,2산단(51개소)	200.00, 300.00	아스콘, 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사리부설	7,375.1	착공일로부터 1년간	11,766.0 (착공일로부터 1년)	1,479.3

끝.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3. 27. ~ 2020. 4. 10.(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 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길3*번길 6-*	36주 ****	2019.12.22 14:56:27	갑천하상 주차장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2	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30번길 11, 1**호(가양동)	04나 ****	2019.12.20 15:29:50	갑천하상 주차장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3	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3**번지 1*/	27가 ****	2019.12.30 06:19:57	석봉동 금강엑슬 루타워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4	(주)이 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90, 2층 2**호(연희동)	71거 ****	2020.01.03 17:09:53	상서동 산 47-25 신탄진휴 게소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5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	2020.01.05 12:53:48	석봉동 770 금강엑슬 루타워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6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60저 ****	2020.01.07 09:31:23	법동 440-4 선비마을 1단지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7	주식 회사 디*** ***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9길 31(교현동)	63버 ****	2020.01.07 16:10:33	송촌동 525 부근 은혜프라 자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8	김**	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로46번길 12-6, 2**호(용전동)	대전6 0바** **	2020.01.11 23:29:02	중리동 462 부근 먹자골목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9	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55, 1**동 23**호 (석봉동, 금 강엑슬루타워)	26하 ****	2019.11.21 19:18:39	석봉동 781부근 금강엑슬 루타워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10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1**동 5**호(평촌동, 행복한마을 아파트)	45러 ****	2020.01.17 10:19:20	평촌동 540-1 행복한마 을아파트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11	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14, 2**호(가경동)	38두 ****	2020.01.25 15:55:32	석봉동 금강엑슬 루타워	2020. 03.09	2020. 03.11	수취인불 명
12	유**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일양길 3**	45고 ****	2020.01.23 16:35:55	오정동 평화로운 아파트	2020. 03.09	2020. 03.11	폐운부재
13	이**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67번길 3*-*(용운동)	02모 ****	2020.01.26 18:50:09	오정동 농 수산물시 장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14	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1730번길 11, 1**호(가양동)	04나 ****	2020.01.16 16:47:36	대화동 갑천하상 주차장	2020. 03.09	2020. 03.12	폐운부재
15	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70, 1**동 4**호(연축동, 주공아파트)	90마 ****	2019.10.31 04:42:10	대덕구 연축주공 아파트	2020. 03.06	2020. 03.13	폐운부재
16	황**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54, 8**호(송촌동, 평원아파트)	18도 ****	2019.11.01 00:13:36	송촌동 평원아파 트	2020. 03.06	2020. 03.13	폐운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 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7	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4번길 53, 2**호(목상동)	92노****	2019.11.04 09:05:44	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18	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87, 1**동 22**호(석봉동, 금강로하스엘크루)	21라****	2019.11.04 11:25:10	석봉동 금강로하스엘크루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19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	2019.11.06 13:38:03	송촌동 459-3 마리스빌딩	2020.03.06	2020.03.09	수취인불명
20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190번길 2*-1*(연축동)	95다****	2019.11.09 17:19:36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21	조**	경기도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	2019.10.12 03:09:39	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2020.03.06	2020.03.11	폐문부재
22	조**	경기도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	2019.10.22 08:24:44	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2020.03.06	2020.03.11	폐문부재
23	조**	경기도수원시장안구 금당로10번길 63, 2**호(조원동, 메가타워)	52하****	2019.10.29 08:18:53	석봉동 금강엑셀루타워	2020.03.06	2020.03.11	폐문부재
24	윤**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6번길 4, 2**호(홍도동)	10도****	2019.11.19 16:09:02	오정동 한남대학교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25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0번안길 57, 1**동 3**호(석봉동, 서우아파트)	02소****	2019.11.17 22:31:03	석봉동 서우아파트	2020.03.06	2020.03.09	수취거절
26	이**	대전광역시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1-33, 2**호(원신흥동)	대전대덕마***	2019.11.16 08:29:34	중리동 한촌공원	2020.03.06	2020.03.12	폐문부재
27	이**	대전광역시유성구 원신흥남로42번길 11-33, 2**호(원신흥동)	대전대덕마***	2019.11.16 08:29:42	중리동 한촌공원	2020.03.06	2020.03.12	폐문부재
28	박**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29, 2**호(괴정동, 에셀빌)	08어****	2019.11.23 16:49:53	평촌동 100 KT&G신탄진공장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29	이**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50길 13-* (비산동)-세외수입거주지주소	68호****	2019.11.11 13:57:33	송촌동 460-4 송촌프라자	2020.03.06	2020.03.13	폐문부재
30	주**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45, 404동 5**호(오산동, 주공아파트)	37보****	2019.10.22 08:21:09	오정동 706-1부근 오정교회	2020.03.06	2020.03.11	폐문부재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3. 27. ~ 2020. 4. 10. (14일 이상)
2. 공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우리 구 관내 도로의 예비도로명 의견수렴
4. 의견제출

예비도로명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10.(금)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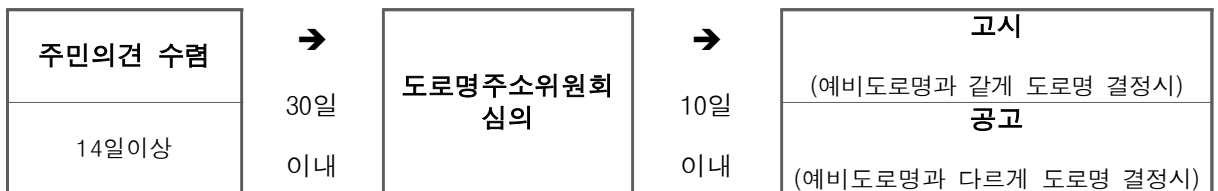
가.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등에 의견서 제출

나. 제출하는 곳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적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우편번호 : 34443)

○ 문의전화 : ☎ 042-608-5302 (FAX : 042-608-3829)

3. 도로명 부여 절차



- 붙임 1.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1부.
2. 도로명 도로구간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첨부

의견서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전화	
	주소			
제 출 의 견	찬 반 여 부			
	사 유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

○ 도로명 : 신탄진로115번안길

조서	도로명	도로위계	관할구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비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시작	끝		
	신탄진로 115번안길	길	대덕구	신대동 4 47-6	신대동 410-1	195	9	10	1	40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현황도	현황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4.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집단급식소식품 판매업	푸른쌀농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412번길 56, 101호(비래동)	장경수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20. 3. 27.~ 4. 10. (15일간)

6. 청문일시 : 2020. 4. 10.(금) 10:00~18:00

7. 청문장소 : 대덕구청 위생과(별관 2층)

8.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까지 대덕구청 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가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

하고, 신고의 시기가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2조 제2항).

나.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5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 4.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감사평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평가실(전화 : 042-608-6032, FAX : 042-608-3812, e-mail : ccccj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평가실 담당자 최지예(전화 : 042-608-6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부강의·회의등의”를 “외부강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 략)</p> <p>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 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 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④ (생 략)</p> <p>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 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그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⑥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 시간을 초과하여 <u>외부강의등을</u></p>	<p>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 부강의등을 할 때에는</u> ----- ----- ----- <u>그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 내에</u> ----- -- <u>외부강의등의</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그 공무 원의</u> -----.</p> <p>⑥ ----- ----- <u>사례금을 받고</u></p>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
준초과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검
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⑦ (생략)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

-----.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

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감 사 평 가 실	
담 당 자 연 락 처	최 지 예 (042) 608 - 60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 변경 등 소관 사무 정비와 전결권 조정을 통하여 능률적인 사무 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직개편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변경 및 기안자·전결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전화: 042-608-6044, FAX: 042-608-3811, E-Mail: kdi04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기획팀(전화: 042-608-60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